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146
----------	-------

제출년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하고,
- 긴급한 법률자문에 대비하여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시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사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중요소송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한 상한액을 삭제하여 주요 소송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긴급한 법률자문의 처리와 시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자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함.
.....(안 제2조제1항)
- 긴급하고 중요한 자문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초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자문으로 지정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자문의 시의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간소화함. (안 제4조제6항)
-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폭력, 폭언 등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민사소송·피해구제신청 등 공무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사후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 제4호, 제5호)

- 중요 소송에 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상한액을 삭제하고 이를 대법원 규칙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 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 범위를 규정함.(안 별표 2)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3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 2019. 3. 7. ~ 2019. 3. 28. (21일간)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 붙임4

방침결정문 : 붙임5

< 불임 1 >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7명” 을 “10명” 으로 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문변호사 등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500만원 이하의 자문수당 범위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사상 고소·고발하여 그 피고발인 또는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민사소송, 피해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피고 또는 피신청인에 대한 패소 취지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5조제2항 중 “지원여부는” 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은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실과 소송비용의 회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의 현재 담당 부서장이 상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요소송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심의안건 상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요소송의 지정 및 소송비용을 정할 수 있으며, 중요소송의 지정 사항은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에 미친다.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2.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고문변호사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요소송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참작하여 협의로써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자문 의뢰 또는 사건 선임되어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소관 실·과		예산법무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담당·팀장 직위·성명	송무팀장 장봉순
	담당자 성명·전화	노다지 (행정 2830)

[별표 2]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기준 (제5조제1항 관련)

관련조항	구 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례금	
제1호, 제2호 관련		형사 입건 이후 제1심까지	2,000만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영수증 포함) • 판결문(결정문) • 사건확정증명원
		형사 항소심	500만원 이하		
		형사 상고심	500만원 이하		
		형사 환송심	250만원 이하		
제3호 관련		민사 심급별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민사 환송심	150만원 이하		
제4호 관련		고 발	200만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영수증 포함) • 결정문 • 사건확정증명원
		고 소	500만원 이하		
제5호 관련		기타 신청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불임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안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 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u>7명</u> 이내 로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고 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하되, 양성(性)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 ----- ----- <u>10명</u> --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소송비용 등) ① ~ ⑤ (생 략)	제4조(소송비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시장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u> <u>에 준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필요하</u> <u>다고 인정할 경우 고문변호사 등 또는</u> <u>외부 법률전문가에게 500만원 이하</u> <u>의 자문수당 범위에서 별도의 계약을</u> <u>체결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u>
제5조(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변호사 선임비용 을 지출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금액 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①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지원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의 상정은 해당 업무의 현재 담당 부서장이 하며, 이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6조(중요소송 등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및 자문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심의안건 상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요소송 또는 중요자문(이하 “중요소송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등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고문변호사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형사상 고소·고발하여 그 피고발인 또는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민사소송, 피해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피고 또는 피신청인에 대한 패소 취지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은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실과 소송비용의 회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의 현재 담당 부서장이 상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중요소송의 지정) ① -----

----- 소송에 -----

----- 중요소송의 지정 및 소송비용을 정할 수 있으며, 중요소송의 지정 사항은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에 미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중요소송 -----

-----.

③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요소송 등의 중요도와 나이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협의로써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착수금 : 2천만 원 이하

2. 승소사례금 : 3천만 원 이하

3. 중요자문 : 3백만 원 이하

③ ----- 중요소송의 중요도와 나이도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참작하여 -----.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2]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기준

구분 소송부	지 금 기 춘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례금	
영 사 소 송	일전 이후 제1심까지	2,000만원 이하		청구서(영수증 포함) 결정문 사건학정증명원
	항소심	500만원 이하		
	상고심	600만원 이하		
	관송심	250만원 이하		
민 사 소 송	상급법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청구서(영수증 포함) 결정문 사건학정증명원
	관송심	150만원 이하		

[별표 2]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기준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관련조항 판결	지 금 기 춘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례금	
제1호 판결	행사 일전 이후 제1심까지	500만원 이하		청구서(영수증 포함) 결정문 사건학정증명원
	행사 항소심	500만원 이하		
	행사 상고심	600만원 이하		
	행사 관송심	250만원 이하		
제2호 판결	민사 결정법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청구서(영수증 포함) 결정문 사건학정증명원
	민사 환송심	150만원 이하		
제3호 판결	고 할	250만원 이하		청구서(영수증 포함) 결정문 사건학정증명원
	고 소	500만원 이하		
제4호 판결	기타 신청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붙임 3】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작성

3. 미첨부 사유

개정안 내용에 따른 세출의 순증가액이 1억원 미만

4. 작성자: 민생경제국 예산법무과장(김상희)